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년 5월 25일

총무 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4월 24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3년 5월 3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1993년5월2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허 병 태)

가. 제안 이유

위 조례의 경우 경력직 공무원이 정년 퇴직할 경우 퇴직전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간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특별휴가 규정이 없음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규정하는데 있음.

나. 주요 골자

근무 상한 연령 및 근무 상한 기간 또는 상한 기간이 만료된 퇴직 예정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3개월의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하는데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무 상)

공무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하여 있고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3조에 특별휴가의 규정 제7항을 보면 예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보면 복무에 관한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력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의무, 책임이 동일하다는 취지에서 혜택을 같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 건 검토 분석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이재득 위원	총무과장 허병태	· 본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것인지?	· 전국 통일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배종환 위원	〃	· 퇴직 예정 공무원이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경우에 판공비나 급료는 그대로 지급되는지?	· 퇴직시까지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급여는 지급되고 성격상 업무 추진 정보비는 주민들과 간담회등의 경비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직무 대리 공무원이 집행함. 그리고 직급상 월정액으로 책정된 품위 유지비 성격의 판공비는 지급함.
임종하 위원	〃	· 동장의 경우 기관장으로 3개월간 휴가를 할 경우 장기간 공백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 동사무소의 경우 직무 대리로서 사무장이 지정되어 있어 동장 공백기간 모든 행정은 사무장 책임하에 이루어 지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